

특별회의[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2022. 10. 12.(수) 13:00-15:30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배경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기후위기가 초래할 재난과 식량난 등 국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정부의 대응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 문제만이 아니고, 인간 안보의 문제이자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이다.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들이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방기하고 있다.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을 아동·청소년들이 그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을 헌법소원으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제기하고, 이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목표

이에 기후위기가 왜 국가의 책임인지를 논의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 논의사항

1. 기후위기와 인권의 관계
2. 국가의 안보적 측면에서의 기후위기의 심각성
3. 식량위기와 식량안보의 문제로서의 기후위기
4. 기본권 보장 의무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5. 기후위기의 증언자들: 농어업인 등
6. 정책적 대응 방향

